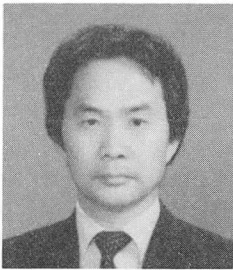


# 축산물 안정가격, 재생산

## —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축산법



정찬길 박사

(건국대학교 축산경영학과 교수)

농림수산부는 8월 17일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축산물 가격안정제도에서 안정가격 고시대상품목으로 쇠고기와 더불어 돼지고기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에 고했다. 이 시행령 개정령(안)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축산법 제 34조에는 축산물의 안정상·하한가격과 관련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안정상·하한가격을 매년 3월 31일까지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제 35조에는 상·하한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이 안정되도록 수매·비축·방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의 상·하한가격안정대책이야말로 주기적인 돼지고기의 가격변동을 일정한 진폭의 범위내로 유지시키기 위한 수요와 공급의 조정방법 가운데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즉 돼지고기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하한가격)로 하락할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개입하여 매입·비축함으로써 공급과잉을 조정하고,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상한가격)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거나 수입의 촉진으로 초과수요를 상쇄하여 돼지고기가격을 안정대내에 유지시킴으로써 양돈농가의 소득안정과 돼지고기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돼지고기의 안정대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 효과적으로 시행되면 가격 진폭이 매우 커서 지극히 불안한 돼지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양돈농가와 돼지고기 소비자를 위해 매우 유익한 정책목표를 지닌 가격안정대체도가 금년 9월 12일부터 시행될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자유화 이정표를 고려하여 보완되지 않는다면 정책목표의 합리적 달성에 회의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돼지고기 수입의 완전자유화는 정부기관의 개입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여 수입할당에서 관세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돼지고기의 수입가격에 일정한 관세를 부과한 가격에 수입돼지고기가 국내에 유통되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대한 완충장치가 있을 수 없다. 만일 국내시장의 돼지고기의 양이 과잉되고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국내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대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돼지고기를 대량 매입하여 비축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 정부기관에 의한 수매·방출대책은 많은 제한을 받거나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보고—

그래서 축산물의 완전수입개방 이전에 축산물 가격안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상·하한가격의 결정기준, 개입시기, 개입도매시장, 안정가격 적용등급, 개입물량, 관측사업 등에서 객관적 기준과 적정수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돈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상·하한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양돈산업의 경제적 측면만이 깊이 고려되어 생산효율에만 집착하게 되면 가격안정사업을 통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양돈농가들에게 제공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하한안정가격의 결정에는 사육농가들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사육규모들의 평균 생산비가 반영되어 재생산유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안정상하한가격의 심의 시기가 매년 3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 심의시기는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축산물의 생산비 조사결과와 발표가 연말이고 회계년도 역시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심의시기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매회계년도 개시전 생산조건,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안정 상·하한가격을 발표하여야 한다.

돼지고기의 가격이 상·하한가격을 벗어날 경우 시장개입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게 되면 오히려 시장메카니즘을 교란시켜 시장가격을 가격안정대로 회귀시키는데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적절한 시장개입시기는 상·하한가격의 5~10% 정도를 벗어나 5~10일 정도가 지속될 때 개입시기가 고려되어야 상·하한가격이 안정대를 벗어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탄력적 회귀력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입대상 축산물 도매시장은 가격형성이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시장이어야 하므로 서울의 3개 축산물 도매시장과 지방대도시의 대표적인 시장이어야 한다. 또한 가격안정대의 적용은 도매시장에 출하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등급이어야 한다. 예컨대 B와 C등급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해체방법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상·하한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입물량은 가격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수매와 방출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수급조절과 가격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매나 방출물량이 최소한 수급물량의 20% 정도의 관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가격안정대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생산물량, 소비수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정확한 관측이 수행되어야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측은 계량적 접근 뿐만 아니라 직관력과 정책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